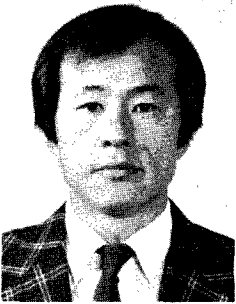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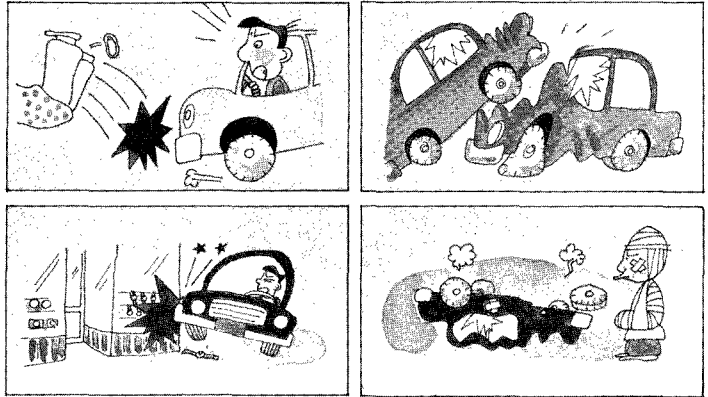


자동차보험 가입과 사고처리 (IV)



최종용

동부그룹 종합조정실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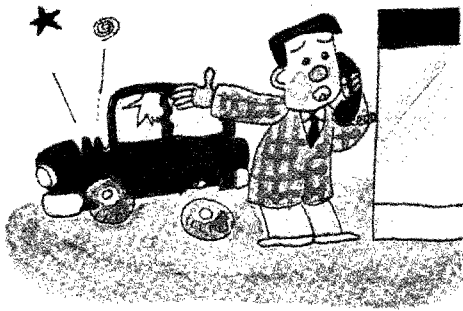


Q 저는 현재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다음주쯤 보험회사와 합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출은 피해자의 수입을 근거로 한다는데 저와 같이 일정한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요? 또한 사고당시 국민학교에 다니던 저의 아들도 얼마전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는데 보상금이 있는지요?

A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입원료 등의 치료관계비와 위자료는 물론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립니다. 그러나 일정한 직업과 수입원이 없는 가정주부는 사업자나 급여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에 의한 휴업손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사종사자는 부상으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치료한 기간만큼 정부노임단가중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거나, 혹은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타당한 실비를 수입감소액으로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직자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감소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휴업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저는 얼마전 시내 친구집에 놀러가서 술을 약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앞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충돌을 하여 앞차가 많이 망가지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경우 다음번 재계약시 어느 정도의 보험료 할증이 되며, 또한 전보험종목에 할증이 되는지요?

A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에는 정해진 기본 보험료의 100%를 납입하게 되지만 보험계약 기간중 사고가 없으면 다음 계약시에는 전보험담보별로 각각 5%씩의 할인을 받고, 그다음 보험기간 중에도 사고가 없을 경우는 계속 5%씩 할인을 받게 되어 최고 40%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보험담보별로 1건에 20%, 2건 50%, 3건 이상일 때 100%를 가산하여 할증하게 되나, 음주운전의 경우 주취한계 이하이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20km/h초과),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위반의 6가지 항목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일반사고의 2건으로 간주하여 50%를 할증하고, 주취한계 이상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일반사고의 3건으로 간주하여 100%를 할증하게 되는데 이는 음주운전이나 중과실사고의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위험이 많고 운전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Q 저는 며칠전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자동차에 치어서 발목과 다리 등을 다쳐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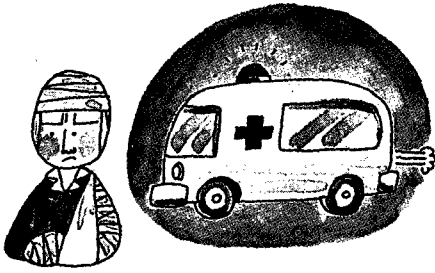
에서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옮겨져서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중인 병원이 집과 너무 멀어 가까운 의원으로 옮기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거주지 인근의 병원으로 옮기기를 원할 경우에는 병원을 옮겨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옮기게 될 경우에는 입원하는 병원에 치료비 보증을 내야 하고 또한 입, 퇴원수속 등도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직원은 보험사고처리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치료비를 포함한 제반상당과 자문에도 응하기 때문에 병원을 옮길 때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담당직원과 상의한 후 옮기게 되면 불편한 점이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저는 얼마전 휴일을 이용해서 가족과 함께 자동차로 교외를 다녀오다가 저의 운전 부주의로 제 옆에 탔던 아들이 약 1개월 정도 치료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이 경우 자손보험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자손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보험자군에 속하게 되므로 자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실제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Q 저는 얼마전 승용차에 부딪쳐 뇌진탕과 오른쪽 무릎에 멍이 들어 2주 진단을 받았으나 4일 입원후 향후치료비를 받고 보험회사와 합의,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두달 가까이 다리가 계속 아파 다시 진찰을 받은 결과 무릎에 멍이 든것이 아니라 인대가 파열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이미 합의를 하였던 데도 보험회사로부터 추가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다시 치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란 쌍방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일치를 본 것이고, 이후에는 다시 논의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당시 병명이 단순히 무릎에 멍이 든 것이었지만 뒤에 다시 진찰한 결과 인대파열로 밝혀졌다면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인대파열에 대하여는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대파열이 당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Q 제차의 운전기사가 얼마전 운전부주의로 지나가는 행인을 치어 사망케하였습니다. 그후 피해자 가족들은 제가 보험가입한 보험회사와 합의가 안되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저에게 법정으로 출두하라는 소장이 접수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우선 접수된 소장을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내용을 검토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 보험회사는 그에 따른 소송비용은 물론 확정판결금액까지 피해자에게 보상하게 되므로 차주는 별도의 민사상의 불이익 즉 경제적 부담이 없게 됩니다. 이경우 차주인 피보험자는 보험회사나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의 제출이나 법원에 출두하여 사실내용을 진술하는 등 소송업무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Q 자동차를 세차 혹은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업체에 자동차를 맡겼는데, 그 정비업자가 맡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보행인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행인에 대한 보상을 하여 주는지요?

A 통상 자동차를 보험가입자 즉 기명 피보험자의 승락을 얻어 사용 또는 관리 중인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상 허락받은 사람을 피보험자로 인정하여 보험가입자와 동등하게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낸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상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차업이나 정비업자 등의 고용인이 사용 또는 관리하다가 사고가 일어나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하여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인 기명피보험자에게는 민사상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Q 저는 얼마전 집앞에 봉고차를 세워 두었다가 밤중에 차를 도난당하였습니다. 그후 약2주일이지나서 도난당한 차량을 발견하여 회수는 하였으나 차량점검결과 차량 앞부분이 많이 찌그러져 수리하지 않고서는 운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 회수된 차량을 도로 찾아갈 경우 차량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회수된 도난차량의 일부가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 파손부위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즉 수리비는 종합보험, 차량손해담보에 가입이 되었을 때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얼마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시내버스에서 가해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데 일반 보험회사의 자동종합보험과 보상기준이 같은지요?

“ 종합보험 대인배상에 있어서 적극적인 손해에는 주사료, 입원료 뿐만 아니라 성형수술비도 포함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처를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즉,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성형수술비는 회수에 제한없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이빨결손분의 보철비는 초회보철분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향후 소요비용으로 인정하여 미리 지급하여 드립니다. ”

A 공제조합은 육운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운수사업자의 공통이익을 위한 단체로 택시공제, 버스공제 등이 있으며 각 지역별로 지부를 두고 손해배상에 대한 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다쳤거나 물건피해가 있을 때 공제조합에서 보상하는 내용은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보상기준과 차이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제조합에서 보험약관 같은 공제사업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Q 저는 88.6월말 영업용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얼굴에 심한 상처와 앞이빨 3대가 빠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제 얼굴의 상처는 어느정도 치유되었지만 얼굴에 흉터가 심하게 남아 몇번의 수술이 필요할 것이라는 성형외과의사의 설명입니다. 이런 경우 여러번의 성형수술비용까지도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지요. 또한 빠진 이빨 3대는 얼마전에 첫번째 보철을 하였을지라도 향후 보철비용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종합보험 대인배상에 있어서 적극적인 손해에는 주사료, 입원료 뿐만 아니라 성형수술비도 포함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처를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즉,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성형수술비는

회수에 제한없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이빨결손분의 보철비는 초회보철분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향후 소요비용으로 인정하여 미리 지급하여 드립니다. 즉 치료비로서 초회 보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여명까지 10년 단위로 복리에 의한 중간이자 공제(라이프니즈 계산)한 금액을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Q 저는 업무용 자동차 몇대를 가지고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종합보험 대인, 대물담보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의 소유 차량끼리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A 자동차종합보험의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시켰을 때 생기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으로서 자기소유의 차량에 의한 손해는 물론 가해자의 가족 즉 차주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들이 소유관리하는 재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동일한 차량끼리 충돌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단 피해를 입은 차량이 차량손해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양 141

(연재 끝)